

의안번호	제775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3일

#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5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3일  
발의자 : 황영호,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도민 안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전용주차구역 화재대응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대응 매뉴얼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진압대응장비)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진압을 위하여 대응장비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 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 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 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사 유

-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며,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장비 확충 현황 >

- '22년 : 화재진압 질식소화포 71백만원
- '23년 : 이동식 침수조 109백만원
- '24년 : 화재진압장비(하수부관창등) 104백만원

※ 추후 법령 등에 따른 비용발생 시 관련규정 재정비 실시